

# 캐나다 여행자통관정보

2023년 8월 기준

휴대품	통관기준	비고
주 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다음 중 단 한 가지 사항만 면세로 반입 가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1.14리터(모든 주류)</li> <li>- 1.5리터 와인</li> <li>- 8.5리터 맥주류</li> </ul> </li> <li>※ 알버타, 마니토바 및 퀘벡주는 만 18세 이상, 여타 주는 만 19세 이상 이어야 반입 가능</li> <li>※ 단위당 알코올 도수가 0.5%를 초과하지 않는 와인이나 맥주의 경우 주류에 해당하지 않음</li> </ul>	Nunavut <sup>준주</sup> 와 Northwest Territories의 경우, 통관기준을 초과하는 주류는 반입 불가능
담 배	<p>아래 모두 면세품목으로 반입 가능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궤연(cigarette) 200개비</li> <li>- 엽궤연(시가, cigar) 50개비</li> <li>- 가공담배류 200g</li> <li>- 흡연에 필요한 관모양의 기타 기구들 200개(tobacco stick)</li> </ul> <p>※ 만 18세 이상이어야 반입 가능</p>	
면세한도금액 (일반면세기준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캐화 60불 이하의 선물은 면세반입 가능</li> <li>• 주류나 담배류, 사업용 물품들은 선물의 범주 아님</li> </ul>	
외국환신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현금 또는 기타 형태의 금전 문서가 캐화 10,000불 (혹은 이에 상응하는 외국환)을 초과하는 경우 신고 필요(자금 세탁, 테러단체 자금 지원 방지법)</li> </ul>	
의약품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타 국가들과 다른 기준을 사용할 가능성 있으며 반입 가능한 의약품의 종류 및 양이 제한되어 있음</li> <li>- 자세한 사항은 캐나다 보건부(Health Canada, <a href="http://www.hc-sc.gc.ca">www.hc-sc.gc.ca</a>)로 문의</li> </ul>	
식 품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매우 복잡한 요구사항, 제한사항 등이 전 식품 군에 걸쳐 적용됨</li> </ul>	

휴대품	통관기준	비고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구체적인 내용은 캐나다식품검사청(Canada Food Inspection Agency, <a href="http://www.inspection.gc.ca">www.inspection.gc.ca</a>) 참고</li> <li>• 미국에서 반입하는 경우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유제품 20kg 이내</li> <li>- 육류 제품 20kg 이내(미국 원산지증명서 필요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※ 단, 조류독감으로 인하여 닭 등 가금류는 소매포장 되어 있고, '미국산' 표시가 되어 있어야 반입 가능</li> </ul> </li> <li>- 어류 및 해산물(건조품 제외) 40kg 이내</li> <li>- 어류 건조품 10kg 이내</li> <li>- 과일 20kg 이내</li> <li>- 채소 20kg 이내</li> <li>- 꿀 20kg 이내</li> <li>- 메이플시럽 20L 이내</li> <li>- 메이플 제품(캔디 등) 4kg</li> <li>- 제빵류 20kg 이내</li> </ul> </li> <li>• 미국 외의 국가에서 반입하는 경우 대부분의 품목에 대하여 미국과 동일한 규정을 적용하나, 일부 품목의 경우 제한사항이 더욱 엄격하고 복잡하여 캐나다 식품 검사청에서 건별 확인 필요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(예) 미국이 아닌 국가의 유제품은 치즈, 아이스크림, 요구르트만 반입 가능하고 우유는 반입 불가하고, 과일·채소는 원산지에 따라 반입이 불가능한 곳도 있음.</li> </ul> </li> </ul>	
반입제한품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총포 무기류: 반입 전에 캐나다 총기류 관리센터 (Canadian Firearms Program, <a href="http://www.cfc-cafe.gc.ca">www.cfc-cafe.gc.ca</a>, 1-800-731-4000)에 문의 필수, 반입시 해당 입국장소에서 반드시 신고 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을 경우 형사 고발되고 모든 물품은 압수 조치</li> <li>• 폭발물, 폭죽, 탄약류: 서면 증명서 혹은 허가증 등이 요구됨, 폭발물 관리부서(Explosives Regulatory Division, <a href="http://www.nrcan.gc.ca">www.nrcan.gc.ca</a>, 613-948-5200)에 문의</li> </ul>	

휴대품	통관기준	비고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무선전파수신장비: 미국 거주자가 아닐 경우, Family Radio Service(미국에서 허가된 생활무전기), 휴대폰, PCS폰 등의 기기를 사용하기 위해 캐나다 산업부 (spectrum_pubs@ic.gc.ca)에서 허가증을 받아야함</li> <li>• 반입금지 소비자 제품: 위해제품에 관한 법령 (Hazardous Product act)에 제시되어 있는 소비자 물품 반입금지. 유아 보행기, 홍두(jerquurity beans, 비즈 공예에 쓰임) 등이 포함. 캐나다는 대부분 국가 대비 더 엄격한 요구사항이 적용되는 점 참고</li> </ul>	
반입제한품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식물 및 동물: 멸종위기의 야생 동물 및 식물군 국제 무역에 관한 협약(The 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of Wild Fauna and Flora)에 30,000 여 종의 야생 동물, 식물 종 및 기타 품종에 대한 요구사항 포함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식물: 일부 미국산 식물군을 제외하고는 본국이 발행한 검역확인증(phytosanitary certificate)이나 캐나다식품검 사청의 반입 허가증이 필요</li> <li>- 애완동물: 생후 3개월 이하의 강아지나 새끼 고양이 및 미국에서 들여오는 흰담비(ferret)는 서류제출 없이 반입가능한 대신 출생확인 증명서 필요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① 온타리오주는 pit bull종 개 반입 금지</li> <li>② 캐나다가 인정하는 '광견병 없는 국가(영국, 일본 등)'의 경우 생후 3개월을 넘긴 고양이, 개에 대해 '광견병 예방접종증서' 또는 '수의사 서명과 날짜가 있는 증명서 (품종, 나이, 성별, 색깔, 특이 사항 등)' 제출 시 반입 가능</li> <li>③ 한국은 캐나다가 인정하는 '광견병 없는 국가'에 속하지 않으므로, 수의사 서명과 날짜가 있는 '증명서'와 '광견병 예방접종증서' 둘 다 필요</li> </ol> </li> <li>- 안내견: 맹인견 등의 경우 안내견을 배정받은 사람과</li> </ul> </li> </ul>	

휴대품	통관기준	비고
	<p>동행할 경우 제한 없이 반입 가능</p> <p>① 개인이 기르는 개 또는 고양이에 대하여는 마이크로 칩이 필요하지 않으나, 판매·번식용, 전시용, 연구용, 특별훈련, 또는 입양 목적으로 데려오는 개로서 8개월 이하 연령일 경우 마이크로칩 필요</p> <p>② 반려동물 사료: 미국에서 들여올 경우 허용 가능하나, 그 외 국가에 대하여는 반입 불가</p>	
반입제한품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멸종위기의 야생 동물 및 식물군 국제 무역에 관한 협약에 의해 감시되는 동물들은 반입허가서 필요</li> <li>- 개, 고양이, 족제비 이외의 동물을 반입하고 싶은 경우 캐나다국경 정보 센터(Border Information Center)나 캐나다식품검역청 등에 문의 필요</li> <li>- 살아있지 않은 멸종 위기 동물: 비상업적 목적으로 여행자의 옷, 악세사리 및 개인 소지용품 경우에만 반입 가능. 반입 이후 90일 동안은 판매 및 처분 금지</li> <li>• 금지 물품: 아동 포르노, 음란물, 혐오 선전물</li> <li>• 헌 매트리스: 수입국에서 훈증 소독, 세탁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증명서가 없을 경우 반입 불가</li> <li>• 문화 유산: 역사적 문화 유물로 간주되는 물품의 경우 적합한 수출 허가증 없이 반입 불가, 반입 전에 문화유산 이동 관리처 (Movable Cultural Property, 1-819-997-7761, www.pch.gc.ca)에 문의 필수</li> </ul>	
기타유의사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캐나다를 경유하면서 물품을 반입하는 경우: 미국인인 경우 반입하는 물품 목록(물품의 가치, 시리얼 번호 등)을 적은 복사본 세 장을 소지하면 검역 과정 간소화 가능</li> <li>• 개인소유 배 혹은 승무원 포함 15인 이하 승객이 탑승한 항공기로 캐나다에 도착하였을 경우: 반드시 도착 전에 전화신고센터(Telephone Reporting Centre)를 통해 캐나다 국경관리청(Canada Border Services Agency)에 신고해야 함.</li> </ul>	